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94
----------	-----

제출년월일 : 2019년 3월 29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교통문화교육원의 이용료를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교통문화교육원의 이용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안 제9조제5항)
- 나. 둘 이상의 이용료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함(안 제9조제6항)
- 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등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19. 2. 21. ~ 3. 13.) 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⑥ 둘 이상의 이용료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이용료) ① 교육원 이용자는 시장이 정하여 게시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 ① 교육원 이용자는 시장이 정하여 게시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 ① 교육원 이용자는 시장이 정하여 게시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 ① 교육원 이용자는 시장이 정하여 게시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 ① 교육원 이용자는 시장이 정하여 게시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생 략)	② (생 략)	② (생 략)	② (생 략)
③ 시장은 운수종사자 및 그 직계 가족의 이용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이용료의 50% 범위 안에서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운수종사자 및 그 직계 가족의 이용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이용료의 50% 범위 안에서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운수종사자 및 그 직계 가족의 이용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이용료의 50% 범위 안에서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운수종사자 및 그 직계 가족의 이용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이용료의 50% 범위 안에서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운수종사자 및 그 직계 가족의 이용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이용료의 50% 범위 안에서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할인의 범위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교육원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 또는 프로그램별로 정하며,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는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할인의 범위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교육원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 또는 프로그램별로 정하며,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는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할인의 범위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교육원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 또는 프로그램별로 정하며,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는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할인의 범위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교육원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 또는 프로그램별로 정하며,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는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할인의 범위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교육원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 또는 프로그램별로 정하며,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는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결혼을 위하여 예식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강당 대여	1. 결혼을 위하여 예식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강당 대여	1. 결혼을 위하여 예식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강당 대여	1. 결혼을 위하여 예식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강당 대여	1. 결혼을 위하여 예식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강당 대여
2. 운수종사자들로 구성된 친목단체 또는 동호회의 회의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강의실 또는 세미나실 대여	2. 운수종사자들로 구성된 친목단체 또는 동호회의 회의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강의실 또는 세미나실 대여	2. 운수종사자들로 구성된 친목단체 또는 동호회의 회의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강의실 또는 세미나실 대여	2. 운수종사자들로 구성된 친목단체 또는 동호회의 회의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강의실 또는 세미나실 대여	2. 운수종사자들로 구성된 친목단체 또는 동호회의 회의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강의실 또는 세미나실 대여
3. 사우나실, 체력단련실, 이·미용실 이용	3. 사우나실, 체력단련실, 이·미용실 이용	3. 사우나실, 체력단련실, 이·미용실 이용	3. 사우나실, 체력단련실, 이·미용실 이용	3. 사우나실, 체력단련실, 이·미용실 이용
4. 교양·취미활동 등의 프로그램 이용	4. 교양·취미활동 등의 프로그램 이용	4. 교양·취미활동 등의 프로그램 이용	4. 교양·취미활동 등의 프로그램 이용	4. 교양·취미활동 등의 프로그램 이용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신 설></p>	<p>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⑥ 둘 이상의 이용료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p>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교통문화교육원 복지시설 이용자에게 제로페이 결제시 이용료 감면혜택을 부여하여 이용료 수입 감소가 예상되나 연평균 1억원 미만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유 은 녕 (02-2133-2327)